



民의 자리에서 온다!

불고지죄(不告知罪)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요즈음 신문을 보면 불고지죄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아도 없는 것을 보면 희귀한 단어임에는 틀림없다. 대충 짐작컨데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신문기사를 보면 유독 국가보안법에만 있다고 하는데 이번 서경원의원 사건으로 유명해진 죄명이다. 반인륜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불가피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나 수사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의무를 지운다거나 부모형제, 친지간에 고발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 법이 당분간은 존속할 모양이다. 또한 알고 있는 사실을 사직당국에 신고를 했어도 4월에 알았느냐 6월에 알았느냐에 따라서 늦게 신고하면 신고를 했어도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우리 축산업계도 이와 비슷한 법이 있다. 수의사가 법정전염병으로 진단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업수의사의 경우에 고객은 한가족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닭이나 돼지가 이상해서 가축병원에 가보면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돈콜레라 경우에 신고하면 소각 매몰 명령이 내려질 것이고, 기르던 가축을 보상 한 푼 없이 땅에 묻어버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산선고와 같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게 된다.

결국 수의사의 표정으로 축주는 장수를 불러 팔아 버리거나 하면 질병은 만연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쉬쉬 해야 되니 인근 농장에서도 방역에 주의를 하기는 커녕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된다.

그저 적당히 호흡기병이나 항생제나 써보라고 한다면 비도덕적이고 무식한 수의사가 될 것이고, 신고하자니 괴로운 처지가 된다. 스승을 따를 수도 사랑을 따를 수도 없는 신파를 연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처벌받은 수의사나 농장주, 농장관리인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왜냐하면 당국도 법은 있지만 법대로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심증이 가도록 수의사가 오리발을 준비하고 있다가 사직당국에 가서 “여기 오리발 있습니다”하고 내보이면 되기 때문이다.

돈콜레라의 경우에는 콜레라로 판정이 되면 그래도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제외나 오제스키병 진단키트 개방으로 불고지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범법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시가의 80%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고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쉬쉬 하는 것보다 이익이기 때문에 신고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물론 백신을 철저히 하면 방역이 되는데 정부가 보상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양축농가들이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방역을 잘 하다가도 어쩌다 발병이 되면 신고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다 잘 알아서 한다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것은 없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돈콜레라의 살처분보상금 지급 대상에서의 제외(30두이하는 존속)나 오제스키병 진단키트의 개업이나 관리수의사에 개방 등으로 불고지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동안의 예로 보아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범법자가 없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이 준법정신을 흐리게 하며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역시 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발병 초기에 신고를 받아 조기 방역으로 피해를 줄이려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고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여건과 이런 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과 어느 것이 방역에 유리할 것인가는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참고로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에 걸리는

법조문을 소개해 본다.

◇가축전염병예방법◇

第2章 家畜의 防疫

第4條(病든 家畜의 申告) ① 傳染性病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家畜을 발견한 때에는 그 所有者(管理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이러한 家畜을 診斷하였거나 傳染性病으로 죽은 家畜의 死體(傳染性病으로 죽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家畜의 死體를 포함한다. 이하 “死體”라 한다)를 檢案한 獸醫師는 農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家畜 또는 死體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長(區를 두지 아니하는 市의 市長에 한한다)·區廳長·邑長 또는 面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家畜의 所有者가 獸醫師에게 당해 家畜의 診斷이나 檢案을 의뢰한 때에는 따로 申告하지 아니한다. <改定 84·12·31 法 3762>

第5章 罰則

第4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处한다.

1. 第4條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한 獸醫師. 